「3월 청렴의 날」 교육결과 보고

❑ 추진개요

○ 부서명 : 주차시설운영처 본사(운영팀, 주차정보팀, 시설팀)

○ 일 시 : 2020. 3. 13.(금)

○ 인 원 : 총 32명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교육으로 대체

○ 교육자 : 주차시설운영처장

❑ 교육내용

○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관련 내용 공유

- 법인카드 집행내역 검토 책임자 지정 운영 안내
  -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비, 회의비 집행 시 집행내역에 검토 책임자 서명 첨부
  -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 실시 예정
- 부서 청렴대책 고유과제 추진 안내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안내

- 금지되는 영리활동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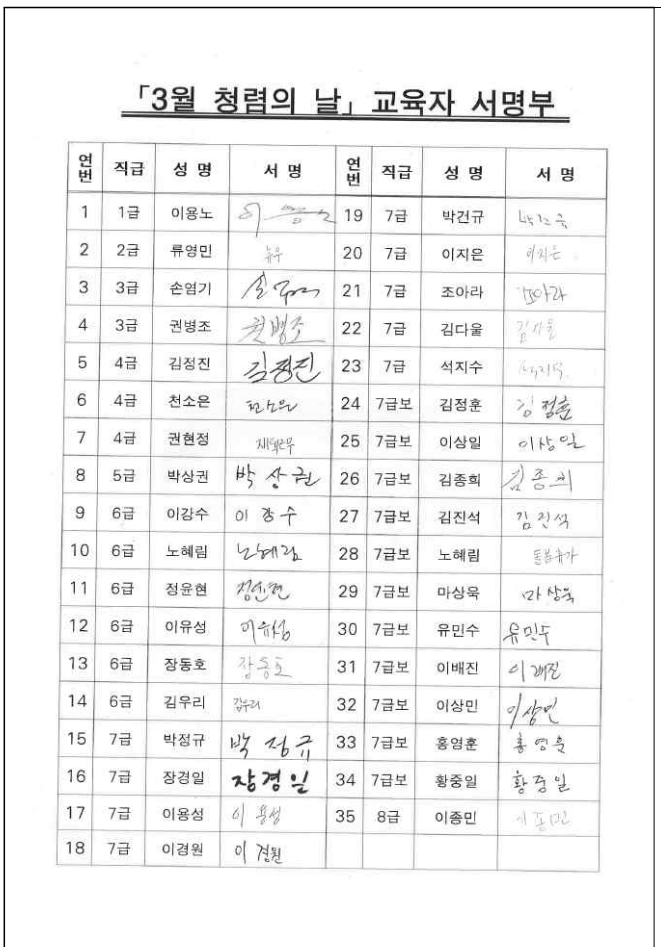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제한되는 접촉형태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회합 • 행사 등의 각종 모임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 서명부 및 교육사진



「3월 청렴의 날」 교육자 서명부

연번	직급	성 명	서 명	연번	직급	성 명	서 명
1	1급	이용노		19	7급	박건규	
2	2급	류영민		20	7급	이지은	
3	3급	손염기		21	7급	조아라	
4	3급	권병조		22	7급	김다울	
5	4급	김정진		23	7급	석지수	
6	4급	천소은		24	7급보	김정훈	
7	4급	권현정		25	7급보	이상일	
8	5급	박상권		26	7급보	김종희	
9	6급	이강수		27	7급보	김진석	
10	6급	노혜림		28	7급보	노혜림	
11	6급	정윤현		29	7급보	마상욱	
12	6급	이유성		30	7급보	유민수	
13	6급	장동호		31	7급보	이배진	
14	6급	김우리		32	7급보	이상민	
15	7급	박정규		33	7급보	홍영훈	
16	7급	장경일		34	7급보	황중일	
17	7급	이용성		35	8급	이종민	
18	7급	이경원					



3월 본사 청렴간담회 관련 안내(서면교육으로 대체)

보낸이 : 이지은 주소록추가
받는이 : 이용노, $+운영팀, $+주차장 보팀, $+시 설팀
참조인 :
숨은참조 :

일반 첨부파일 1개 | 전체선택 | PC저장

공직자 행동강령.pptx 3,341 KB

안녕하세요, 운영팀 이지은입니다.

3월 청렴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교육으로 대체합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한되는 접촉형태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회합 · 행사 등의 각종 모임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신고대상이 아닌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공청회,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 서면신고

신고

소속기관장 | 공직자+퇴직자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신고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제공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빈발
전·현직 공직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 통로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하여 맡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제한되는 접촉 형태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회합 · 행사 등의 각종 모임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서명부	교육사진(서면교육으로 대체)